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9.7.9.(화) 16:00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**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6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·군수의 업무위탁 규정, 필요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정의 등 신설(안 제2조, 안 제6조)

나. 도지사 및 시장·군수의 업무위탁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
다.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또는 업무의 확인·검사규정 신설  
(안 제11조의2)

5. 검토의견

- ‘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

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·군수의 업무위탁 규정, 필요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